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사보고서

2024. 12. 2.

행정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: 2024년 11월 8일

나. 제출자: 영등포구청장

다. 회부일자: 2024년 11월 15일

라. 상정일자: 제257회 영등포구의회 2024년도 제2차 정례회

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(2024. 11. 21.) 상정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: 행정국장 김형성)

가. 제안이유

- 주요 정책사업의 효과적인 추진과 행정수요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조직으로 운영하기 위해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」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가. 정원의 직급별 정원표 개정(안 별표 3)

구분	합계	구분청	구의회 사무국	보진소	동
총계	1,492	952	36	114	390
정무직	1			1	
일반직	1,487			1,487	
일반직	3급	1	-	-	-
	4급	8→9 (+1)	6→7 (+1)	1	1
	5급	66→67 (+1)	33→34 (+1)	2	13
	6급 이하	1,411→1,409 (△2)			1,411→1,409(△2)
	전문 경력관	1			1
별정직	4			4	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(전문위원: 강용철)

-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미래도시국 및 미래공간과, 청년정책과를 신설함으로써 주요 정책사업의 효과적인 추진과 행정수요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조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,
-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
 - 안 별표3은 직급별 정원표에 관한 사항으로 정원 총수는 동일하나 세부사항으로 일반직 4급 1명 및 일반직 5급 1명을 증원하고, 일반직 6급 이하 2명을 감원함.
- 검토 결과
 - 본 조례의 상위법령을 살펴보면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4조(기준인건비제 운영)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기준인건비를 기준으로 기구와 정원을 자율적으로 운영하게 되어있으며, 행정안전부는 매년 기준인건비를 산정하여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고 있음.
 - 2024년 우리 구(區) 기준인건비 총액은 1,458억 원이고, 2024년 기준인건비 예산 편성액은 1,535억 원이며 이번 일부개정에 따른 직급별 정원 조정으로 107,353천 원이 순증할 것으로 추산함.
 - 한편,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난 '22년 10월 31일 3가지 중점사항을 둔 「보통교부세 혁신방안」을 발표함. 그 중 '지방재정 건전화'를 살펴보면 자율적인 인력감축을 지원하기 위해 기준인건비를 절감하는 경우 200%특전(인센티브)을 부여하고, 기준인건비를 초과하여 인건비를 지출하는 경우 초과한 인건비만큼 감액(페널티)한다는 사항임. 이에 따라 후속 조치로 「지방교부세법」 시행규칙이 개정(개정. 2023.12.29.)되면서 2025년 산정분부터 전전년도(2023년) 지방자치단체 기준인건비 초과집행(지방자치단체 인건비 결산액 기준) 시 보통교부세 감액이라는 페널티가 주어지기에, 기준인건비 집행액이 당해연도 기준인건비를 초과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할 것으로 사료됨.

4. 심사결과: 원안 가결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제 438 호
----------	---------

제출연월일: 2024. 11. .
제 출 자 : 영등포구청장

1. 제안이유

주요 정책사업의 효과적인 추진과 행정수요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조직으로 운영하기 위해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」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정원의 직급별 정원표 개정(안 별표 3)

구분	합 계	구분청	구의회 사무국	보건소	동
총계	1,492	952	36	114	390
정무직	1	1			
일반직	1,487	1,487			
일반직	3급	1	1	-	-
	4급	8→9 (+1)	6→7 (+1)	1	1
	5급	66→67 (+1)	33→34 (+1)	2	13
	6급 이하	1,411→1,409 (△2)	1,411→1,409(△2)		
	전문 경력관	1	1		
별정직	4	4			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지방자치법」,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

나. 예산조치: 비용추계서 참조

다. 협의사항

1) 규제심사: 신설·강화되는 규제사무 없음

2) 부패영향평가·성별영향분석평가·인권영향평가: 해당 없음

라. 입법예고(2024.10.25. ~ 11.04./10일간) 결과: 의견 없음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정원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으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현원이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.

[별표 3]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표(제4조 관련)

기관별		총 계	본청	구의회 사무국	보건소	동
작급별						
총 계		1,492	1,492			
정무직		1	1			
일반직 계		1,487	1,487			
일반직	3급	1	1	-	-	-
	4급	9	7	1	1	-
	5급	67	34	2	13	18
	6급 이하	1,409	1,409			
	전문경력관	1	1			
별정직 계		4	4			
6급 상당 이하		4	4			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

1. 비용발생 내역: 세출예산 순증가 (인건비)

- 직급별 정원 조정에 따른 인건비 증가

직급	4급	5급	6급 이하	비고
조정인원(명)	+1	+1	△2	

2. 비용추계 기준: 일반직 인건비

- 비용추계기간: 12개월(2025. 1. ~ 12.)

- 비용추계내역: 기본급+직급보조비+국민건강보험금+연금부담금+수당

- 비용추계 산출식: [4급(1명) 인건비+5급(1명) 인건비]-7급 인건비(2명)

3. 비용추계 상세내역

(단위 : 천원)

구 분	비용추계 인건비	직급별 평균 인건비			비고
		4급(연봉제)	5급(연봉제)	7급(13호봉)	
합 계	+107,353	143,172	126,229	81,024	
기본급	+120,541	104,643	93,012	38,557	
직급 보조비	+3,480	4,800	3,000	2,160	
국민건강 보험금	+2,906	3,872	3,448	2,207	
연금 부담금 등	+18,957	25,253	22,490	14,393	
수당	△38,531	4,604	4,279	23,707	

※ 수당: 시간외근무수당, 정액급식비, 명절휴가비, 연가보상비, 정근수당, 정근수당가산금, 성과상여금 등